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345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심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경제통상국,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8. 5. 23. ~ 6.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대전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 사업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규모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단체의 지원을 위한 수시 지원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대전광역시보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신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실·국 단위별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보조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실적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및 참 고 자 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8. 2. 28 법률 제8852호)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2. 28 대통령령 제20741호)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

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1호)

제8조(기준경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사회단체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운데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개정 2007. 7. 18 행정자치부훈령 제23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제2조관련)

- 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함
- ① 다만,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

② 자치단체별 기준액

-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
- 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①시·도, ②시·자치구,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③일반구가 있는시, ④군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식을 적용함
- 산정공식

(단위 : 천원, 명, km²)

유형별	산식
시·도	$S = d + 7b/100,000 + 6a + 3p/100$
시·자치구,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S = d + 47b/100,000 + 40a + 18p/100$
일반구가 있는시	$S = d + 12b/100,000 + 40a + 10p/100 + 211,000 \times \text{일반구수}$
군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 범례 >

- ▲ S : 단체별 상한기준액 ▲ b : 직전년도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 a : 자치단체면적(km²) ▲ p :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 d : 기초기준액(천원)
- 광역시·도(1,800,000천원) · 시·자치구, 특별자치도의 행정시(470,000천원)
- 일반구가 있는시(530,000천원) · 군 (340,000천원)

< 산정공식 도출 >

- ① 2003년도 사회단체 지원규모를 샘플링후 광역, 시·구, 군으로 구분 평균값 산정
- ② 산정된 평균값을 고려 『기초 기준액』 산정
- ③ 그동안 동결된 보조금을 고려 12%인상 수준으로
 - 면적, 예산규모, 인구를 변수로 시뮬레이션하여 산식을 확정
- ④ 일반구가 있는 시의 경우 1개 구당 211,000천원 추가
 - ※ 9개시 : 수원(4), 성남(3), 고양(3), 부천(3), 안산(2), 안양(2), 청주(2), 전주(2), 포항(2)
- ⑤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군폐지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주행정시는 305,000천원, 서귀포행정시는 310,000천원 추가

③ 주요 예산편성기준

○ 대상단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범위

-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 자본적 경비는 제외

○ 계획수립·공고

- ▶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

○ 위원회구성·운영

-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구성(권고사항)

○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 ▶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 ※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다음연도중 주민에 공개 예정
- ▶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 ▶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정산외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권고사항)
-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
 -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대상 심의시 이를 면밀히 검토

■ 기타 참고자료

○ 특별시 및 기타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

구분	지 원 절 차	운 영 사도	비고
A형	예산편성 → 공고(1월) → 신청 → 심사(위원회) → 집행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B형	공고(9월) → 신청 → 심사 → 예산편성 → 집행	대구	

○ 금회 상정 조례안 (서울시를 비롯한 기타 광역시와 같은 유형 : A형)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방침의 보조금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국별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편성 후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공고(1월)
-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실·국별로 지원규모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

※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의 보조금 지원절차와 동일

○ 심의보류된 기 제정안 (대구시와 같은 유형 : B형)

- 매년 예산편성전 다음연도의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9월)
-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실·국별로 지원규모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심의결과서를 기초로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안 승인으로 확정

※ 당해년도 사업완료전 다음연도 사업신청으로 평가 및 환류기능 부재 등 문제점 도출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7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24일
3. 상 정 일 자 :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7. 22)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 양승찬)

1. 제안이유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심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고자 하며, 본문 18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을,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실적보고 등 기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훈령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으로 운영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된 대외 구속력 및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안 제10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정한 것은 실·국별로 7개 분야 분과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 것이므로 위원수를 축소하여 분과위원회를 3~4개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중 금번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제통상국장과 문화체육국장은 경제과학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I. 수 정 내 용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45
----------	-----

제안연월일 : 2008. 7.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3~4개 정도로 운영토록 위원수를 축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일부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를 30명으로 축소함(안 제10조제2항).
- 나.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일부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인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중 "50"을 "30"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을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p> <p>②..... 50인</p> <p>③....., <u>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u> <u>문화체육국장,</u>..... </p> <p>1. - 2. (생략) ④ - ⑤ (생략)</p>	<p>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30인</p> <p>③....., <u>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u> <u>문화체육관광국장,</u>..... </p> <p>1. - 2. (제정안과 같음) ④ - ⑤ (제정안과 같음)</p>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